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문열 의원입니다.  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상권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 용도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은 주거공간 외 문화·오락·편의·상업시설 등 복합적 용도의 건축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생활 편의 시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최근 상업지역의 높은 공실률로 인한 지역 침체 및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도심 지역의 기능회복과 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비(非)주거용도 비율을 낮추고자 합니다.

- 따라서 ‘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’ 이외에도 도시·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선정한 지역도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